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1. 22 선고 2024가단894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2.

주 문

- 피고와 B가 2022. 5. 25. [별지1]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5. 30. 접수 제321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B는 2022. 5. 25. 기준 [별지2]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5,314,8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B는 2022. 5. 25. 배우자인 피고에게 [별지1]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)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2022. 5. 3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[별지3] 기재 예금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각 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. B는 위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는, B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, D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약 530,000,000원을 갖고 있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더 많았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을 제3호증만으로는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,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(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),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 채권을 적극재산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다. 피고는, B가 체납상태인 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, 선의의

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전승수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최보원

별지